

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정관 개정 보고

1. 개정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정수) 제2호 개정에 따라 공사 정관의 노동이사 정수 조정 필요
 -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(제7조)가 “정원이 300명 이상인 공사의 노동이사 수는 2명”에서 “정원이 1,000명 미만인 공사의 노동이사 수는 1명”으로 개정됨

2. 개정내용

- 정관 제10조 제1항 : 비상임 이사 및 노동이사 정수 조정
 - (현행)8인 이내의 비상임이사(노동이사 2명 포함)
 - (개정)7인 이내의 비상임이사(노동이사 1명 포함)

현 행	개 정(안)
제10조(임원)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상임이사과 8인 이내의 비상임이사(당연직이사 2명 및 노동이사 2명 포함) 및 1인의 감사를 둔다. ②~③ (생략)	제10조(임원)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상임이사과 7인 이내의 비상임이사(당연직이사 2명 및 노동이사 1명 포함) 및 1인의 감사를 둔다. ②~③ (현행과 같음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근거 :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('24.5.20.), 「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」 ('24.8.1.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합의 필
- 라. 질 차 : 이사회 의결 → 서울시의회 보고 → 서울시장 인가 및 공포 시행
- 마. 참고사항 : 정관 개정(안)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각 1부. 끝.

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정관 일부 개정(안)

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(임원) 제1항 “8인 이내의 비상임이사(당연직이사 2명 및 노동이사 2명 포함)”을 “7인 이내의 비상임이사(당연직이사 2명 및 노동이사 1명 포함)”으로 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정관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10조(임원)</p> <p>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8인 이내의 비상임이사(당연직이사 2명 및 노동이사 2명 포함) 및 1인의 감사를 둔다.</p> <p>②~③ (생략)</p>	<p>제10조(임원)</p> <p>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7인 이내의 비상임이사(당연직이사 2명 및 노동이사 1명 포함) 및 1인의 감사를 둔다.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(시행일)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참고 자료

○ 【개정 전】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

제7조(정수) 공사 등에 두는 노동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. 이 경우 노동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〈개정 2019. 3. 28. 2020. 7. 16.〉

1.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: 각각 노동이사 2명
2. 노동자 수가 300명 미만인 공사 등: 각각 노동이사 1명

○ 【개정 후】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

제7조(정수) 공사 등에 두는 노동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. 이 경우 노동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〈개정 2019. 3. 28. 2020. 7. 16.〉

1. 노동자 수가 1,000명 이상인 공사 등: 각각 노동이사 2명
2. 노동자 수가 1,000명 미만인 공사 등: 각각 노동이사 1명